
영양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018. 2.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
-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

산출산식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지난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현황

(단위:백만원, %)

기관명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2017년	2018년		지방세	세외수입
영양군	4.22	4.07	243,000	4,099	5,782

-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양군	3.85	4.51	4.10	4.22	4.07

1-1-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자체수입+자주재원)의 비율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좋음.

산출산식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현황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자주자원	
	2017년	2018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영 양 군	61.66	59.70	243,000	4,099	5,782	132,700	2,500

○ 연도별 재정자주도

(단위:%)

기 관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 양 군	65.84	63.56	58.64	61.66	59.70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우리군 예산규모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산출산식

$$\text{사회복지비율(\%)} = \frac{\text{사회복지분야 예산}}{\text{우리군 예산규모}} \times 100$$

§ 사회복지분야 : 8개부문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 현황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사회복지비비율 (A=B/C)	사회복지분야예산 (B)	예산규모 (C)	비 고
영 양 군	19.02	50,270	264,300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자체사업비율 (B/A)	보조사업비율 (C/A)	예산규모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 (C)	비 고
영 양 군	30.8	48.31	264,300	81,400	127,683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행정운영경비 (B/A)	예산규모 (A)	행정운영경비 (B)	비 고
영 양 군	15.85	264,300	41,891	

1-1-6. 예비비 확보율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비율 (C/A)	내부 유보금비율 (D/A)	예산규모 (일반회계) (A)	일 반 예비비 (B)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C)	내 부 유보금 (D)	비 고
영 양 군	0.83	0.49	-	243,000	2,021	1,200	-	

1-1-7.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대비 인건비 비중

○ 자체수입 및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

○ 비율이 100% 초과하면 인건비 미해결 단체임.

산출산식

$$\text{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 \frac{\text{인 건 비}}{\text{자 체 수 입}} \times 100$$

§ 인건비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일반회계 기준

○ 현황

(단위:백만원, %)

기 관 명	인건비 (A)	자 체 수 입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비율 (A/(B+C))	비 고
		지 방 세 (B)	세외수입 (C)		
영 양 군	31,509	4,099	5,782	318.88	

(단위 : 원)

구분	내부거래 제거 후 (A+B+C-D)	내부거래 제거 전 (A+B+C)	자치단체 (A)	지방공사 공단(B)	출자출연 기관(C)	내부거래 제거(D)
통합자산	1,541,341,177,883	1,564,667,627,883	1,528,617,557,663	30,794,550,690	5,255,519,530	23,326,450,000
·유동자산	112,491,960,502	112,491,960,502	97,614,552,842	14,521,888,130	355,519,530	-
·투자자산	6,757,549,040	30,083,999,040	25,183,199,040	800,000	4,900,000,000	23,326,450,000
·일반유형자산	51,988,186,563	51,988,186,563	35,716,324,003	16,271,862,560	-	-
·주민편의시설	194,786,778,195	194,786,778,195	194,786,778,195	-	-	-
·사회기반시설	1,174,587,564,545	1,174,587,564,545	1,174,587,564,545	-	-	-
·기타비유동자산	729,139,038	729,139,038	729,139,038	-	-	-
통합부채	26,375,662,019	26,375,662,019	9,945,681,790	16,399,130,520	30,849,709	-
1. 유동부채	21,012,062,713	21,012,062,713	4,624,963,114	16,382,740,609	4,358,990	-
·이자부금융부채	17,150,000,000	17,150,000,000	1,350,000,000	15,800,000,000	-	-
·기타유동부채	3,862,062,713	3,862,062,713	3,274,963,114	582,740,609	4,358,990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70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	-	-
3. 기타비유동부채	2,663,599,306	2,663,599,306	2,620,718,676	16,389,911	26,490,719	-
통합자본	1,514,965,515,864	1,538,291,965,864	1,518,671,875,873	14,395,420,170	5,224,669,821	23,326,450,000

○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우 발 부 채 현 황				
	우발부채총계 (A+B+C+D)	영양군 (A)	영양고추 유통공사 (B)	출자· 출연기관 (C)	내부거래 (D)
계	15,800	15,80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5,800	15,800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소송관련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백만원)

지급보증기관	발생연도	제공받는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	채권자
	계		15,800	-	
영양군	2016	영양고추 유통공사	8,800	-	농협은행
	2016		7,000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백만원, %)

기관명	예산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양군	264,300	170,899	64.66	93,401	35.34	

5 재정운영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16.1.1.~2017.6.30.)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북도	2016.08.05.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시정 6건 회수 15,774천원 감액 470,111천원	조치완료
경상북도	2017.02.24.	경상북도 종합감사(현지처분)	시정 7건 회수 3,312천원 감액 179,252천원	조치완료
경상북도	2017.03.16.	경상북도 종합감사(본처분)	시정 2건 회수 266,211천원 감액 203,000천원	조치완료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해당없음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재정건전성분야

(단위 : %)

단체명	통합재정 수지비율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 부채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양군	6.15	65.42	1.19	10.34	18.68	113.92	-4.98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작성기준

- 대상세목 : 군세 전 세목
- 회계연도 : 직전연도(2016년 결산액) + 당해연도(2017년 추계액)

○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4.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생략

1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요

5-1-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16년(결산)	'17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 감면액		1,164,096,690	1,493,239,000	329,142,310
	비과세	955,156,970	1,288,535,000	333,378,030
	감면	208,939,720	204,704,000	-4,235,720
지방세 징수액		4,790,830,870	4,992,830,870	202,000,000
비과세 감면율		19.5	23.0	-

5-1-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분 야		'16년(결산)		'17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총 계		1,164,096,690	100	1,493,239,000	100	329,142,310	28
	일반공공행정	252,575,290	21.69	547,520,000	36.66	294,944,710	1160
	공공질서 및 안전	4,464,580	0.38	4,094,000	0.27	-370,580	-8
	교육	10,728,920	0.92	8,525,000	0.57	-2,203,920	-20
	문화 및 관광	20,983,820	1.8	22,058,000	1.47	1,074,180	5
	환경보호	65,060	0	71,000	0	5,940	9
	사회복지	110,308,040	9.47	110,937,000	7.42	628,960	0
	보건	3,950,480	0.33	3,533,000	0.23	-417,480	-10
	농림해양수산	33,360,030	2.86	28,431,000	1.9	-4,929,030	-14
	산업 중소기업	617,740	0.05	522,000	0.03	-95,740	-15
	수송 및 교통	759,500	0.06	631,000	0.04	-128,500	-16
	국토 및 지역개발	2,065,640	0.17	2,207,000	0.14	141,360	6
	과학기술	-	0	-	0	-	0
	국가	716,322,170	61.53	756,646,000	50.67	40,323,830	5
	외국	-	0	-	0	-	0
	기타	7,895,420	0.67	8,064,000	0.54	168,580	2

5-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분 야	'15년(결산)		'16년(추계)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총 계	1,164,096,690	100	1,493,239,000	100	329,142,310	28
보통세	1,164,096,690	100	1,493,239,000	100	329,142,310	28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4,099,500	2	23,097,000	2	-1,002,500	-4
재산세	1,048,731,390	90	1,379,982,000	92	331,250,610	31
자동차세	91,265,800	8	90,160,000	6	-1,105,800	-1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5-1-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면 유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계	1,164,096,690	1,493,239,000	329,142,310
계	1,164,096,690	1,493,239,000	329,142,31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05,491,600	488,842,000	283,350,40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760	2,000	-2,76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12,011,010	14,099,000	2,087,99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0,079,360	29,908,000	9,828,64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988,560	14,669,000	-319,56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464,580	4,094,000	-370,58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55,650	57,000	1,35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0,607,510	8,384,000	-2,223,5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65,760	84,000	18,24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9,933,640	20,967,000	1,033,36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37,070	295,000	-42,07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713,110	796,000	82,89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65,060	71,000	5,94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7,040,000	6,600,000	-44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61,652,130	63,428,000	1,775,87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201,020	1,199,000	-2,0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347,120	5,668,000	320,88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160,870	12,631,000	-1,529,87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9,334,080	9,569,000	234,9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76,020	96,000	19,98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1,496,800	11,746,000	249,20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950,480	3,533,000	-417,48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50,000	50,000	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8,607,760	1,600,000	-7,007,76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066,840	1,961,000	-105,84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5,727,840	17,818,000	2,090,16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282,470	0	-282,47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6,625,120	7,002,000	376,880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434,140	430,000	-4,14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3,600	92,000	-91,60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759,500	631,000	-128,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065,640	2,207,000	141,360
국가에 대한 비과세	715,855,090	756,153,000	40,297,91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67,080	493,000	25,92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866,390	4,804,000	-62,39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297,040	1,584,000	286,96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483,200	471,000	-12,20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426,360	385,000	-41,360

②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목	'16년(결산)	'17년(추계)
전체		총 합 계	1,164,096,690	1,493,239,000
일반공공행정 (010)		합계	252,575,290	547,520,00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 1호, § 90, § 109① 1호, § 145① 1호, §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1·2호)	소계	205,491,600	488,842,000
		주민세	1,500,000	1,500,000
		재산세	203,040,530	486,360,000
		자동차세	951,070	982,00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 109②, § 145②)	소계	4,760	2,000
		재산세	4,760	2,00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90①, § 90②)	소계	12,011,010	14,099,000
		주민세	1,300,000	2,300,000
		재산세	10,711,010	11,799,00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 1호, § 145②)	소계	20,079,360	29,908,000
		재산세	20,079,360	29,908,00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① 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④)	소계	14,988,560	14,669,000
		재산세	14,988,560	14,669,000

공공질서 및 안전 (020)		합계	4,464,580	4,094,00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 · 지변 · 소실 ·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 · 등록면허 · 레저 · 주민세 · 재산 · 자동차 · 지방소득 · 담배 소비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④, § 92① 1호, § 92②, § 92③)	소계	4,464,580	4,094,000
		재산세	41,250	41,000
		자동차세	4,423,330	4,053,000
교육 (050)		합계	10,728,920	8,525,00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 · 등록면허 · 주민세 · 재산 · 지방소득 ·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 1호, § 88 1호, § 109① 1호, § 145① 1호, § 145②)	소계	55,650	57,000
		재산세	55,650	57,000
8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 · 등록면허 · 주민세 · 재산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①, § 41②, § 41③, § 41⑤) - 산업체부설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 · 실습용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입목 · 선박에 대하여 취득 · 등록면허 · 주민세 · 재산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2①, § 42②, § 42⑤)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⑦)	소계	10,607,510	8,384,000
		주민세	3,112,000	850,000
		재산세	7,495,510	7,534,000
9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 재산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 재산 · 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5②)	소계	65,760	84,000
		재산세	65,760	84,000

문화및관광 (060)		합계	20,983,820	22,058,000
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0①, § 50②, § 50③, § 50⑤, §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④)	소계	19,933,640	20,967,000
		주민세	4,247,500	4,793,000
		재산세	15,686,140	16,174,000
11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2①)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소계	337,070	295,000
		재산세	337,070	295,000
12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소계	713,110	796,000
		재산세	713,110	796,000
환경보호 (070)		합계	65,060	71,000
13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 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47)	소계	65,060	71,000
		재산세	65,060	71,000

사회복지 (080)		합계	110,308,040	110,937,000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 77②)	소계	7,040,000	6,600,000
		주민세	7,040,000	6,600,000
1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계	61,652,130	63,428,000
		자동차세	61,652,130	63,428,000
16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①, § 22②, § 22③, §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⑥)	소계	11,496,800	11,746,000
		주민세	6,300,000	6,504,000
		재산세	5,196,800	5,242,000
1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2①, § 22의2②)	소계	1,201,020	1,199,000
		재산세	1,201,020	1,199,000
1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시설및직접사용하는부동산취득면제,재산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1호)-경로당용부동산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1호)-양로시설,경로당의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 2호)	소계	5,347,120	5,668,000
		재산세	5,347,120	5,668,000

19	<p>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②, §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54① 8호)</p>	소계	14,160,870	12,631,000
		자동차세	14,160,870	12,631,000
20	<p>임대주택에대한감면-임대주택사업자가공동주택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①·③)-한국토지주택공사의60㎡이하매입임대용공동주택등에대하여취득·재산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④)-한국토지주택공사의임대목적소유하는소규모주택에대하여취득·재산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2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일시적으로매입한미분양주택및부속토지에대하여재산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②)(삭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환매기간내재매입하는경우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③)(삭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취득하는주거용부동산에대해서취득세면제,재산세0.1%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④)(삭제)-대한주택공사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취득한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를임대시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⑦)-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_2년이상임대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2①, § 31의2②)-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출대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p>	소계	9,334,080	9,569,000
		재산세	9,334,080	9,569,000

	<p>【 재산세액 -(담보대출금액*60/100*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 35의3)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3) -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4)</p>			
21	<p>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 35의2)</p>	<p>소계</p>	<p>76,020</p>	<p>96,000</p>
		<p>재산세</p>	<p>76,020</p>	<p>96,000</p>
<p>보건 (090)</p>		<p>합계</p>	<p>3,950,480</p>	<p>3,533,000</p>
22	<p>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③)</p>	<p>소계</p>	<p>3,950,480</p>	<p>3,533,000</p>
		<p>재산세</p>	<p>3,950,480</p>	<p>3,533,000</p>

농림해양수산 (100)		합계	33,360,030	28,431,000
23	<p>농업인에 대한 감면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p> <p>-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광주·광산)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대전·유성)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경남·양산)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 (경남·진주) 초전·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 (충남·보령)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 (경기·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p>	소계	50,000	50,000
		주민세	50,000	50,000
24	<p>한국농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 대한감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농지관리기기등을융자할경우저당권설정등기등록면허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1호)-농지장기입대차사업또는영농규모확대사업에따라입차하는토지에관한등기등록면허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2호)-농지매매사업등에따라취득하는농지,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따라취득하는농업기반시설용토지·시설물취득·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1호)-한국농어촌공사의경영회생지원사업용부동산에대해취득세면제,재산세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2호)-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취득하는농지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3호)-제3자공급목적의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부동산취득세면</p>	소계	8,607,760	1,600,000
		재산세	8,607,760	1,600,000

	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4호)-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따라취득하는농지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5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무상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③)			
2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1)	소계	2,066,840	1,961,000
		재산세	2,066,840	1,961,000
2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14의2)	소계	15,727,840	17,818,000
		재산세	15,727,840	17,818,000
27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282,470	0
		재산세	282,470	0
28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6)	소계	6,625,120	7,002,000
		재산세	6,625,120	7,002,000

산업·중소기업 (110)		합계	617,740	522,000
29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계	434,140	430,000
		재산세	434,140	430,000
30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대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8②)	소계	183,600	92,000
		자동차세	183,600	92,000
수송 및 교통 (120)		합계	759,500	631,000
31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차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계	759,500	631,000
		자동차세	759,500	631,000
국토 및 지역개발 (140)		합계	2,065,640	2,207,000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4②) - 철도보호지구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4③)	소계	2,065,640	2,207,000
		재산세	2,065,640	2,207,000
국가 (700)		합계	716,322,170	756,646,000
33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 1호, § 90, § 109①, §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 126)	소계	715,855,090	756,153,000
		주민세	550,000	500,000
		재산세	711,109,080	752,186,000
		자동차세	4,196,010	3,467,000

3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 109① 2호, § 109②, § 145②)	소계	467,080	493,000
		재산세	467,080	493,000
기타 (900)		합계	7,895,420	8,064,000
35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9⑤, § 109③ 3호, § 109③ 5호, §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 137②)	소계	1,297,040	1,584,000
		재산세	1,297,040	1,584,000
36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15② 4호) - 철도건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6①)	소계	4,866,390	4,804,000
		자동차세	4,866,390	4,804,000

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계	483,200	471,000
		재산세	483,200	471,000
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계	426,360	385,000
		재산세	426,360	385,000
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소계	749,380	748,000
		재산세	749,380	748,000
40	자동차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차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계	73,050	72,000
		재산세	150	0
		자동차세	72,900	72,000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백만원, %)

발행 년도	사업명	차입선	지급선	발행액	발행일	이율	2017년말 잔액
2004	수해복구사업 (태풍 ‘매미’)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5,000	2004.03.17.	3.5	1,000
2004	영양군고추 종합처리장설립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4,500	2004.07.07.	3.5	900
2004	종합위생 매립장조성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4,000	2004.07.13.	3.5	800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단위:백만원, 명)

기관명	설립연도	정원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영양고추 유통공사	2006	24	30,795	16,399	14,395	15,437	15,308	129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16년 결산기준)

과목 장-관-항-목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미수납액 ⑤=①-④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액 ③	실제수납액 ④=②-③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93,464,097,364	292,513,644,970	167,357,965	292,346,287,005	1,117,810,359	11,568,640	1,106,241,719
100 지방세수입	5,438,655,200	4,952,170,160	161,339,290	4,790,830,870	647,824,330	11,568,640	636,255,690
110 지방세	5,438,655,200	4,952,170,160	161,339,290	4,790,830,870	647,824,330	11,568,640	636,255,690
111 보통세	4,843,233,640	4,724,855,900	148,661,620	4,576,194,280	267,039,360	72,100	266,967,260
111-03 주민세	151,419,940	143,908,110	125,140	143,782,970	7,636,970	72,100	7,564,870
111-04 재산세	698,252,420	668,232,510	157,620	668,074,890	30,177,530	-	30,177,530
111-05 자동차세	1,777,473,990	1,644,996,420	9,959,030	1,635,037,390	142,436,600	-	142,436,600
111-07 담배소비세	1,139,552,820	1,139,571,610	18,790	1,139,552,820	-	-	-
111-09 지방소득세	1,076,534,470	1,128,147,250	138,401,040	989,746,210	86,788,260	-	86,788,260
113 지난년도수입	595,421,560	227,314,260	12,677,670	214,636,590	380,784,970	11,496,540	369,288,430
113-01 지난년도수입	595,421,560	227,314,260	12,677,670	214,636,590	380,784,970	11,496,540	369,288,430
200 세외수입	17,149,260,435	16,685,293,081	6,018,675	16,679,274,406	469,986,029	-	469,986,029
210 경상적세외수입	3,523,162,395	3,413,946,799	3,371,955	3,410,574,844	112,587,551	-	112,587,551
211 재산임대수입	201,651,100	170,729,560	1,150,600	169,578,960	32,072,140	-	32,072,14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01,651,100	170,729,560	1,150,600	169,578,960	32,072,140	-	32,072,140
212 사용료수입	791,676,309	769,083,054	2,154,625	766,928,429	24,747,880	-	24,747,880
212-01 도로사용료	5,270,550	5,226,850	-	5,226,850	43,700	-	43,700
212-05 시장사용료	60,172,820	55,553,330	531,750	55,021,580	5,151,240	-	5,151,240
212-08 기타사용료	726,232,939	708,302,874	1,622,875	706,679,999	19,552,940	-	19,552,940
213 수수료수입	220,363,170	213,930,070	-	213,930,070	6,433,100	-	6,433,100
213-01 증지수입	62,590,010	61,223,010	-	61,223,010	1,367,000	-	1,367,00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1,331,060	68,098,260	-	68,098,260	3,232,800	-	3,232,800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3,682,320	23,682,320	-	23,682,320	-	-	-
213-04 기타수수료	62,759,780	60,926,480	-	60,926,480	1,833,300	-	1,833,300
214 사업수입	810,066,941	764,056,456	66,310	763,990,146	46,076,795	-	46,076,795
214-01 사업장생산수입	713,000	713,000	-	713,000	-	-	-
214-08 의료사업수입	809,353,941	763,343,456	66,310	763,277,146	46,076,795	-	46,076,795
215 징수교부금수입	145,725,430	145,725,430	-	145,725,430	-	-	-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45,725,430	145,725,430	-	145,725,430	-	-	-

과목 장-관-항-목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미수납액 ⑤=①-④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액 ③	실제수납액 ④=②-③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16 이자수입	1,353,679,445	1,350,422,229	420	1,350,421,809	3,257,636	-	3,257,6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43,946,038	1,043,387,779	-	1,043,387,779	558,259	-	558,259
216-03 기타이자수입	309,733,407	307,034,450	420	307,034,030	2,699,377	-	2,699,377
220 임시적세외수입	13,626,098,040	13,271,346,282	2,646,720	13,268,699,562	357,398,478	-	357,398,478
221 재산매각수입	605,592,500	568,617,660	-	568,617,660	36,974,840	-	36,974,840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05,592,500	568,617,660	-	568,617,660	36,974,840	-	36,974,840
222 부담금	430,000,000	430,000,000	-	430,000,000	-	-	-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430,000,000	430,000,000	-	430,000,000	-	-	-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51,943,780	125,236,280	-	125,236,280	26,707,500	-	26,707,500
223-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8,435,090	17,035,090	-	17,035,090	1,400,000	-	1,400,000
223-02 변상금및위약금	23,683,050	23,372,850	-	23,372,850	310,200	-	310,200
223-03 과태료	109,825,640	84,828,340	-	84,828,340	24,997,300	-	24,997,300
224 기타수입	12,164,010,268	12,090,378,470	200	12,090,378,270	73,631,998	-	73,631,998
224-01 불용품매각대	77,865,550	77,865,550	-	77,865,550	-	-	-
224-06 그외수입	12,086,144,718	12,012,512,920	200	12,012,512,720	73,631,998	-	73,631,998
225 지난연도수입	274,551,492	57,113,872	2,646,520	54,467,352	220,084,140	-	220,084,140
225-01 지난연도수입	274,551,492	57,113,872	2,646,520	54,467,352	220,084,140	-	220,084,140